

## 정부대행기관 지정서

기관명	
대표자	
소재지	
업무범위	

「해사안전법」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대행 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